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29 선고 2021가합778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8. 7. 접수 제7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전기홍, 판사 이정훈, 판사 서동원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C에 있는 D건물 E동 제4층 F호

[도로명주소] 제주시 G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지1층 59.64㎡

1층 408㎡

2층 397.34㎡

3층 404.9㎡

4층 41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C 대 93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84.816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9389분의 198. 끝.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채납자인 B(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건 924,009,000원의 조세채권이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채납자는 2018. 3. 20.부터 2018. 6. 14.까지 및 2018. 11. 21.부터 2020. 7. 2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채납자의 딸 H이 2018. 6. 5.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래, 2018. 6. 15.부터 2018. 11. 2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채납자와 피고는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특수 관계인에 해당합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세적변경이력, 갑 제3호증 가족사항조회).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

채납자는 2012. 7.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I 소재 대지 및 상업용 건물 1건을 소외 J 종친회에 계 8,600,000,000원에 양도하고 897,012,9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이에 중랑세무서장은 2012. 12. 10.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건에 대해 2012. 12. 31.을 납

부기한으로 하여 907,238,850원을 납부 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습니다.

<표 1 : B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 원)	체납액 (단위 : 원)
중앙	양도소득세	2012	2012-07-31	2012-12-31	907,238,850	904,009,000
합 계					907,238,850	904,009,00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은 2012. 7. 31. 성립하였고, 아래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은 2018. 8. 7.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납부 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여기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으며, 위 판례의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됩니다. 따라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상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즉,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피보전채권액에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실상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924,009,000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채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채납자는 2018. 8.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로 해주었습니다(갑 제 5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항).

이에 채납자는 피고의 주주 K가 채납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계약 편의상 채납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후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K와 피고 간의 투자관련 계약서도 없고, 관련 회계처리도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채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심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재산 상태를 보면,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채납자의 적극재산은 1,166,980,378원이고, 채납자의 소극재산은 1,771,632,298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표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부 동 산	집합건물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D건물 E동F호 (이사건 부동산)	주가 제출한 양도 계약서 (갑 제 6호증)
	장지	경기도 의정부시 M (2193㎡)	공시지가 (근저당설정채권잔액 : 475,650,658원)
	답	강원도 영월군 N (2,357㎡)	공시지가 (공동담보 권으로 채권잔액 없음)
	임야	강원도 평창군 O (10,951㎡)	
	답	강원도 고성군 P (4311㎡)	
	소계	877,031,530	
예금	Q조합명일역지점	14,443,469	금융거래제공요구서에 의한

	(계좌번호 1 생략)		
	R은행 S금융센터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97,910	
	R은행 공통역지점 (계좌번호 4 생략)	734	
	중소기업은행공통역지점 (계좌번호 5 생략)외 3건)	981,401	
	T은행 신청담지점 (계좌번호 6 생략)	44,239	
	U은행 태릉역지점 (계좌번호 7 생략)	514,752	
	V조합 월계지점 (계좌번호 8 생략)	765	
	V조합 (계좌번호 9 생략)	1,000	
	W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4,238	
	X은행 태릉지점 (계좌번호 11 생략)	23,806	
	Y주식회사 (계좌번호 12 생략)	273,836,534	2020년까지 압류후 추심완료
	소 계	289,948,848	
	적극재산 계	1,166,980,378	
조세채무		1,295,981,640	
은행채무		475,650,658	V조합월계지점
	소극재산 계	1,771,632,298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서 채납자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동기를 설정하여, 그 결과 채납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4. 채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인 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

51908 판결 등).

채납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과세처분을 고지 받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채납한 상황에서 향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채납자가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는 채납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경료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와 같이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인 이 사건의 매매예약이 2018. 8. 7.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합니다.

6.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채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결 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채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